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2·29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을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연결한 구역 내 물체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예방위원회 심의 및 위험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비행장의 기준 마련(안 제35조의5 신설)
- 나.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35조의6 신설)
- 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35조의7 신설)
- 라.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 금지행위 추가(안 제50조제18호 신설)
- 마.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제2호폐목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의2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8제4항제3호·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 및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비행장 또
는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1.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인 비행장 또는 비행장시설
2.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이착륙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 또는 비
행장시설

제35조의6(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류충돌 발생 시 주체별, 단계별 보고·전파 절차 및 자료관리

2.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공항별 활주로 수,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과 장비(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장비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항 및 공항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의 계절별 서식·이동 현황
4. 공항 및 공항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 유인·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5. 법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결과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5조의7(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국가유산청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0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여객 터미널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그 밖에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장치는 제외한다.)를 운행하는 행위

별표 3 제2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법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 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250	400	5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 시설 가. ~ 다. (생략) <u><신설></u> 라. ~ 사. (생략) 2. ~ 6. (생략) <u>제31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u> <u>설치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개</u> <u>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및</u> <u>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u> <u>각 호와 같다.</u> 1. <u>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u> <u>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u> <u>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u> <u>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u> <u>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u> <u>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u>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6 <u>호의2에 따른 항공교통관</u> <u>제시설</u> 마. ~ 아. (현행 라목부터 사 목까지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
· 착륙대 · 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지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제35조의5(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8제4항 제3호 ·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 및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비행장 또는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신 설>

1.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인 비행장 또는 비행장시설

2.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이착륙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 또는 비행장시설

제35조의6(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류충돌 발생 시 주체별, 단계별 보고·전파 절차 및 자료관리

2.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공항별 활주로 수,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과 장비(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6제2항에 따른 장비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항 및 공항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의 계절별 서식·이동 현황

4. 공항 및 공항 주변의 조류와 야생동물 유인·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신 설>

제50조(금지 행위) 법 제56조제6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17. (생략)

<신 설>

5. 법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결과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5조의7(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국가유산청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0조(금지 행위)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여객 터미널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

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그 밖에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장치는 제외한다.)를 운행하는 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65